

독일판례

출판기관이 학술적 전문성을 갖추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결문을 특정 출판기관에만 송부해주는 것은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행정 법원 1992. 12. 1. 자 결정

-BVerwG 7B 170.92 사건 -

적용법조

독일기본법 제 3 조 및 제 5 조

판결요지

판결문의 출판을 위해서 판결문의 사본을 출판기관에 송부해 줌에 있어서, 그 출판기관이 학술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본을 송부해 주고, 또는 해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게 출판기관의 의견내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타당성 있는 그리고 출판기관의 의견내용과는 무관한 기준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에 저촉되는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이유

Berlin 재정법원은 그 스스로 또는 그 소속법관들이 「재정법원판결집」이라는 판례집에의 게재를 위하여, 위 법원에서 한 판결들을 이 사건 3 명의 공동참가인에게 송부해 주고 있었던 바, 이 사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발행하는 「Steuertip(세금정보)」라는 정보잡지에 위 판결들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비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도 역시 위 판결들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심의 행정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2 심법원은 1992.. 8. 25. 자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위소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는 바, 항소법원이 위 상고를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 이의는 이유가 없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상고 허가의 이유로서 주장하고 있는, 법률적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중요성(행정소송법 제 132 조 제 2 항 제 1 호)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원고가 제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즉 피고가 Berlin 재정법원 소속의 판사들에 대하여, 위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3 명의 공동참가인에게 송부해 준 판결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피고에게 통지해 주고, 그럼으로써 원고도 역시 위 판결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관의 직무상의 의무로서 부과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점은 이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하등의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항소법원은 그 판결을 함에 있어서 판결이유로서, 피고는 그 소속법원의 법관들의 판결 공표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기는 하다. 따라서 이러한 공표행위는 그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의 고유한 행사로서 피고에게 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항소법원은 위와 같은 설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독립된 판결 이유를 추가하여 설시하고 있다. 즉 설사 위와 같은 권한이 피고에게 귀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판결문의 사본을 송부해 주지 아니한 것은 객관적으로 극히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판결이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 즉 전문적으로 학술적인 출판기관과 전문학술적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출판기관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을 독일 기본법 제 3 조 제 1 항이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Berlin 재정법원의 판사들은 그들의 공표활동의 범위내에 있어서는, 공표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판결문들은 오로지 전문학술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법률관련 출판기관에게만 교부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즉 원고의 주된 관심사는 전문학술적인 토론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대하여 구체적인 세금절세의 방법에 관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설시에 대하여는 상고법원의 입장에서는-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병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하등의 특별히 언급할 점이 없다. 출판기관이 학술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판결문의 사본을 송부해주거나 또는 송부해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게 출판기관의 의견내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당성 있는 그리고 출판기관의 의견내용과는 무관한 중립적인 기준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별을 두는 것이 피고에게 있어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BVerfGE 80,124(134) 참조)오히려 이와 같은 차별화는 병원의 판결문을 전문적 학술적인 관점에서 선별하는 것이 일반(전문) 공중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에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독일기본법 제 3 조 제 1 항의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독일기본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로부터 파생되는 국가의 중립성의 의무에도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BVerwG IC 30.71 1974. 12. 3. 자 판결 및 BVerwGE 47,247(254)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항소법원의 차별화는,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출판기관에 대한 사실인정상의 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항소법원의 사실인정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는 것이다(행정소송법 제 137 조 제 2 항).